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1층  
전화 : 02-725-4777 / 홈페이지 www.sonjabgo.org / 이메일:sonjabgo47@gmail.com

- ◎ 수 신 : 사회부 및 노동, 법조부, NGO 담당 기자
- ◎ 발 신 : 손잡고(대표 배춘환)
- ◎ 발송일자 : 2018년 12월 18일
- ◎ 제 목 : [손잡고 운영위 입장문] 한홍구 교수는 독단과 전횡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 **[한홍구 교수가 제기한 명예훼손소송 종결에 대한 손잡고 운영위원회 입장문] 한홍구 교수는 독단과 전횡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 **1. 한홍구 교수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진보진영의 역사학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홍구 교수가 손잡고 운영위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11월 16일에 있었고, 12월 10일 항소 포기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회비반환소송에 이어 한홍구 교수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적분쟁이 손잡고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음을 알립니다.

### **2. 한홍구 교수의 독단과 전횡이 다시 한 번 법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확정된 1심 선고의 판결 내용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들이 작성한 진상조사 보고서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와 제언>의 내용은 모두 사실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이유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피고 3인(손잡고 운영위원인 박래군, 박병우, 윤지영)이 작성한 보고서도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소에서 “‘손잡고’ 사무국 운영 과정에서 독단과 전횡이 없었다.” “활동가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되지 않았고 개인적인 업무를 맡긴 적도 없다.” “자신이 윤지선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윤지선 스스로 사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들이 주장해 왔던 대로 한홍구는 손잡고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독단과 전횡을 저질렀고, 1인 활동가는 업무에 시달렸는데 거기에 한 교수 개인 업무까지 떠맡겼고, 윤지선은 본인이 사직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과정을 거쳐서 해고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손잡고 회비에 대해서도 한홍구 교수는 “평화박물관이 ‘손잡고’에 사무실과 활동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손잡고’가 자립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어서 ‘손잡고’의 자립 시 기존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대해서도 “피고들은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약 석 달 동안 진

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 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하여 1기 운영위원 등의 검토를 거친 점, 위 보고서 내용에 원고의 주장도 포함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것이 기초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 경위, 목적, 그 구성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시민단체의 운영 실태 등을 대중에게 알리고, 그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부 인사의 독선이나 전횡을 비판하며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 보고서를 작성·배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나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손잡고’ 회원들의 회비 반환 소송에서도 저서 회비를 ‘손잡고’에 반환한 데 있어서, 자신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이제 법정으로까지 번졌던 ‘손잡고’ 부당해고 건은 한홍구 교수의 독단과 전횡을 확인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법원에 의해서 완전 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3. 한홍구 교수는 활동가에 대한 부당해고와 괴롭히기를 반성해야 합니다.

벌써 4년 전의 일입니다. 손잡고의 1인 활동가였던 윤지선 활동가는 사업비 전용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2015년 7월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손잡고 운영위원회는 활동가를 복직시켜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이후 한홍구 교수가 윤지선 씨의 활동가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강짜를 부리게 되면서 파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홍구 교수를 설득해서 사태를 봉합해보려던 노력은 한홍구 교수의 아집 앞에서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윤지선 활동가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현장과 관련된 사업을 처리하여야 했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카페를 전전하면서도 각종 음해에 시달리는 심적 고통도 당해야 했습니다.

2016년 4월, ‘손잡고’는 총회를 거쳐서 2기 운영위원을 선임하면서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활동가 부당해고 사건, 회비가 반환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보고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의해서 2기 운영위원 중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병우(당시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 3인으로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의 명예훼손 건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진상조사소위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 종합하고, 관련 당사자들을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시민사회에 공유하였습니다.

우리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홍구 교수 측에 회비 반환을 종용하였으나, 한홍구 교수 측은 반환해야 할 회비 중에서 사무실 사용료, 활동가 인건비 등을 자의로 계산하여 제한 뒤에 매우 적은 액수만을 이월하고는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방기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들은 여러 명의 인사들이 나서서 한홍구 교수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홍구 교수는 자신의 주장만을 거듭하고, 윤지선 활동가와 3인의 진상조사소위 위원들을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한홍구 교수와 오랜 시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한 인권변호사가 중재에 나서서 막판 내용까지 합의한 적이 있으나 한홍구 교수는 자신이 반환하는 회비를 굳이 ‘발전기금’이라고 명명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려서 결렬시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이런 과정 중에 평화박물관에서는 활동

가들이 쫓겨나는 일이 다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손잡고’는 더 이상의 중재로는 회비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통해서 회비 반환에 나섰다, 법원은 우리의 주장대로 회비를 반환할 것과 평화박물관 사업 기금으로 유용한 회비도 반환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항소심까지 모두 끝났고, 이 또한 한홍구 교수의 주장은 전면적으로 부인되고 손잡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으면 이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한 교수는 도리어 진상보고서로 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진상조사소위원 3인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한 교수의 행태에 대해서 법원의 준엄한 판단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한홍구 교수의 독단과 전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평화박물관 활동가들이 한홍구 교수의 독단과 전횡으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 4. 시민사회는 한홍구 교수를 언제까지 관용할 것인가?

한홍구 교수는 분쟁 내내 ‘손잡고 단체를 만든 공로’를 앞세워 면죄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난 4년 동안 회비반환 거부, 손잡고 회원자료 이관 거부 후 CMS일괄 종료 등 손잡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 온갖 방해로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홍구 교수의 실책을 감싸는 잘못된 시민사회의 풍토가 이번 사안을 ‘손잡고 사태’로 명명하게 되면서, 손잡고는 운영상 문제와 부당해고 문제를 일으킨 단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손잡고는 지속적인 성찰로 운영상의 문제를 바로잡고, 한홍구 전 위원의 독단적 행태로 부당해고된 활동가를 내부결정을 통해서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이는 단체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초 진상조사보고서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 역시 시민사회 내에서 활동가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고, 내부적 실수를 구성원의 민주적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한홍구 교수는 지금도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주창하는 진보적인 역사학자로 저술, 강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정부의 프로젝트까지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한홍구 교수가 진보적인 역사학자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인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괴롭히기까지 하는 인사가 과연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한홍구 교수는 이제 지금까지의 태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국가권력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과거 독재자의 행태를 따라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운동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의 진보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기에 시민사회는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사회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사회로서는 다른 영역보다 더욱 무겁게 이런 가치들을 실현해야 합니다.

한홍구 교수가 그동안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기여한 면도 있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단

체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활동가들을 자의적으로 해고하는 짓을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대체로 한홍구 교수의 독선과 전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가 애꿎게 활동가들만 쫓겨나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애매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한홍구 교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의 반인권적인 태도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했으나, 친분관계로, 또는 한 교수가 진보진영의 인사라는 이유로 그의 잘못을 감싸왔습니다. 한홍구 교수를 둘러싼 일련의 문제제기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할 내부 갈등 정도로 단정 지었습니다. 이런 시민사회 특히 몇몇 상층 인사들의 태도는 활동가들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대표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진 인사의 독단과 전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손잡고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단체에서 갈등이 불거졌고, 이에 실망하거나 좌절한 활동가들은 단체를 떠났고, 요지부동의 관행과 인맥의 벽을 통해 시민사회의 혁신은 요원한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한홍구‘들’이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사로 남아서 전횡을 휘두르는 동안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신뢰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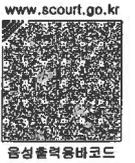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느 영역이나 부분보다 보다 도덕적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지기를 바랍니다. 성찰하지 못하면 혁신할 수 없고, 혁신하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손잡고’ 관련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관행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시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곳으로 거듭나고, 청년 활동가들이 활기차게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손잡고’는 앞으로도 고통 받는 노동자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손잡고’는 시민사회 속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판결문(2018. 11. 16)

2018년 12월 18일  
손잡고 운영위원회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 14 민사부

### 판 결

사 건 2018가합528679 손해배상(기)  
 원 고 한홍구

피 고 1. 박래군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10길 26, 1층 (성산동, 인권중심사람)  
 2. 박병우  
           서울 중구 정동길 3, 14층 (정동, 경향신문사건물)  
 3. 윤지영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김한규

변 론 종 결 2018. 10. 24.

판 결 선 고 2018. 11. 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의 전문을 손잡고[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대표자 배춘환]의 홈페이지(www.sonjabgo.org) 상단에 제목은 2호 활자로, 내용은 5호 활자로 게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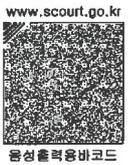
## 이 유

### 1. 기초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손잡고(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정의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와 관련된 노동자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시민모금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이고,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평화박물관'이라 한다)는 평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 원고는 성공회대학교 교수이자 평화박물관의 이사인바, 2014. 3.경 '손잡고'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 2014. 3. 28. 개최된 '손잡고'의 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고가 이사로 있는 평화박물관은 '손잡고'의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평화박물관이 '손잡고'의 실질적인 사무국 역할을 하고, 평화박물관 명의의 계좌를 '손잡고'



의 후원회비 모금에 이용하며, 사무실과 활동가는 평화박물관이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 2014. 5. 7. 및 2014. 5. 26. '손잡고' 홈페이지에 '손잡고'와 함께 할 활동가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공고가 게재되었고, 이에 윤지선이 지원하여 2014. 6. 2. 평화박물관과 윤지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 윤지선이 2015. 7.경 원고와의 갈등으로 '손잡고'의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손잡고'는 2015. 8. 4.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윤지선을 복귀시켜 당시 추진되던 '손잡고'의 주요사업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 9.경 내지 10.경에는 1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 새롭게 2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는 2기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 '손잡고'는 2016. 4. 25.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피고들을 포함한 2기 운영위원을 선출하였으며, 2기 운영위원회 내에서 팀을 구성하여 1기 운영위원회 활동 과정의 문제점, 특히 윤지선이 2015. 7.경 '손잡고'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 피고들은 위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2016. 7. 20.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사건 조사결과 보고와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를 발간하여 시민단체 등에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문제되는 부분
제1쟁점 - '손잡고' 운영과정에서 원고의 독단과 전횡이 있었다는 내용	①...'손잡고'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원고의 독단적인 사무국 운영이 주원인이었으며... ②...원고는 '손잡고'를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독립적인 단체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평화박물관 사업의 일환으로 사고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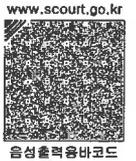




	<p>③ 이런 위계적인 구조에서 원고의 업무 지시는 일방적이었고, 활동가(윤지선)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이런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원고의 독단과 전횡이 가능했고...</p> <p>④ '손잡고' 사무국의 지휘는 원고가 맡았으며, 평화박물관 사무처장이 원고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가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졌다.</p>
<p>제2쟁점 - 윤지선의 업무가 과중하였고 원고 개인업무까지 처리하였다는 내용</p>	<p>⑤...평소 1인의 활동가는 약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 '손잡고'의 과중한 업무 외에도 평화박물관 업무와 ㉡ 원고의 개인업무에까지 동원되어 정당한 휴식과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했다.</p> <p>⑥ 사무국의 1인 활동가는 '손잡고' 업무의 과중함을 원고에게 계속 호소하였고, 사무국의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묵살당하거나 계속 지연되었다.</p>
<p>제3쟁점 - 원고가 윤지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내용</p>	<p>⑦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사건 조사결과 보고와 제안(이 사건 보고서 제목)</p> <p>⑧...2015. 7.경 활동가에 대한 부당한 해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p> <p>⑨...활동가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원인으로 활동가가 결국 해고당한 상황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해고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p> <p>⑩ '손잡고' 1기 운영위원회의 아무런 결의도 없이 임의로 활동가를 부당해고 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p>
<p>제4쟁점 - 원고(평화박물관)가 '손잡고'에 대한 무상지원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p>	<p>⑪...애초의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활동가의 활동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손잡고'가 활동가의 활동비와 사무공간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p>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8, 10호증, 을 1, 2, 4, 5,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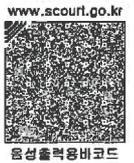
이 사건 보고서는 허위사실인 제1 내지 4쟁점 부분을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1조, 제760조에 따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손잡고' 홈페이지에 이 사건 판결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그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거기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





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한편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 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 58823 판결 등 참조).

## 나.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 1) 제1쟁점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손잡고' 사무국 운영 과정에서 독단과 전횡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쟁점은 원고의 운영 행태에 대한 피고들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다룬다.

#### 나) ①, ③ 부분

갑 8호증, 을 12, 16, 20,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보고서는 '손잡고' 1기 운영위원이었던 원고와 '손잡고' 활동가 윤지선 사이의 갈등 때문에 윤지선이 2015. 7.경 원고로부터 일을 그만둘 것을 통보받고 업무를 중단하게 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새롭게 구성된 '손잡고'의 2기 운영위원들인 피고들이 위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을 조사, 규명할 목적으로 작성한 문건인 점, ○ '독단'이나 '전횡'이라는 단어는 가치평가가 가미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①, ③ 부분은 원고의 사무국 운영 방식에 대



한 피고들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다) ② 부분

갑 19호증, 을 9, 26,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평화박물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손잡고'를 평화박물관의 사업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거나, 2015. 2. 12. 평화박물관 관련 사업에 '손잡고'의 후원금 300만 원이 유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은 위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보고서에서 ② 부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 내지 태도에 대한 피고들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라) ④ 부분

갑 19호증, 을 4,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손잡고'의 창립 당시 평화박물관이 '손잡고'의 실질적인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평화박물관의 사무처장 석미화가 윤지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제2쟁점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윤지선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업무를 맡긴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윤지선 혼자 처리하기에는 '손잡고'의 업무량이 많았으며, 윤지선은 원고가 초대된 모임에 대신 참석하거나 책 서문 작업, 강의자료준



비 등 원고 개인의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⑤-㉠ 부분

갑 10, 19호증, 을 4, 5, 16, 2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윤지선은 2015. 7.경 무렵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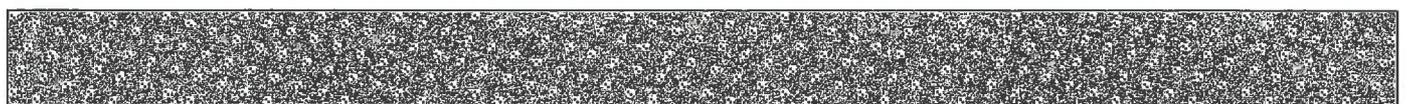
○ 윤지선이 지원할 당시 '손잡고'의 구인공고 내용에는 '손잡고'와 함께 할 활동가를 찾는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평화박물관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평화박물관이 '손잡고'의 초기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활동가를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윤지선은 평화박물관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윤지선은 '손잡고'의 활동가로서 '손잡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였다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손잡고'의 사업은 모금활동 이외에도 피해노동자 지원활동, 농성현장 지원활동, 법제도 개선활동, 홍보활동 등으로 다양한데, 이를 실제로 처리할 실무담당자는 사실상 윤지선 한 명이었다.

○ 또한 윤지선은 위와 같은 '손잡고'의 업무에 더하여 평화박물관의 업무까지 일부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⑤-㉡ 부분

을 17 내지 20, 35,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윤지선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하였던 서울대학교 민주열사합동추모제는 '손잡고'나 평화박물관 업무와 직접적





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윤지선에게 원고의 구술을 받아적도록 하였던 책 서문 작업 역시 평화박물관이나 '손잡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그 원고료를 평화박물관 재정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임의적 선택에 따른 결과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책 서문 작업을 평화박물관의 업무로 볼 수는 없는 점, ○ 원고가 윤지선에게 자료준비를 부탁한 강의가 '손잡고' 내지 평화박물관과 관련된 것인지 원고의 대학강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윤지선에게 지시한 업무 중 원고 개인업무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⑥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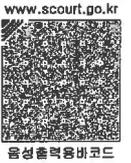
을 2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윤지선의 요구에 응하여 업무량 경감이나 사무국의 독립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⑥ 부분에서 '묵살'이나 '지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윤지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정황적, 수사적 과장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제3쟁점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윤지선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윤지선 스스로 사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윤지선의 열악한 근로조건, 원고의 독단적인 사무





국 운영 등에 대하여 윤지선이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던 것이라고 다룬다.

나) ⑦ 내지 ⑩ 부분

갑 2, 4, 8호증, 을 12, 16, 20, 23, 24, 27, 30, 31,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보고서의 목적과 성격,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서에서의 부당 해고는 "윤지선이 2015. 7.경 원고와의 갈등으로 인해 원고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고 '손잡고'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을 지칭한다.

○ 윤지선은, 당시 원고에게 '손잡고' 후원금이 평화박물관 자금으로 유용된 것을 지적하거나 '손잡고' 사무국의 평화박물관으로부터의 독립 등을 요구하자 원고가 '손잡고' 활동을 그만 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윤지선이 '손잡고'의 재정, 지출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손잡고'의 재정 관리나 독립적인 운영 등의 문제 때문에 원고와 윤지선 사이의 대립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윤지선은 원고가 '손잡고'를 그만 두고 평화박물관 활동가로 다시 지원하라는 취지의 구두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당시 원고는 '손잡고'의 독립적인 운영 등을 요구하는 윤지선에게, 윤지선은 평화박물관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손잡고'의 활동가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윤지선에게 "윤지선은 '손잡고' 활동가가 아닌 평화박물관 활동가이므로 평화박물관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말





이 안 된다. 윤지선은 평화박물관에 재입사하여 평화박물관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손잡고'에 파견 나가 근무하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 발언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윤지선으로서는 '손잡고'의 운영 개선 등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니 만약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면 '손잡고' 활동을 그만 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윤지선과 '손잡고' 사업 관련 방송을 기획 중이었던 김은희나 '손잡고'의 대표자였던 조은 등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윤지선을 '손잡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항의하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윤지선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윤지선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윤지선의 진술, 김은희 작성의 이메일, 윤지선과 평화박물관의 석미화 사무처장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윤지선은 위와 같은 원고와의 대립 때문에 일방적으로 '손잡고' 업무에서 배제된 후 자신이 시정을 요구하였던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는 없다.

○ '손잡고'의 유일한 실무담당자였던 윤지선의 업무 중단으로 '손잡고'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자 '손잡고' 운영위원들은 2015. 8. 4. 긴급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윤지선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였고, 그 후 추가 논의를 거쳐 원고 등을 포함한 1기 운영위원회 활동을 종료한 뒤 새로이 2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2기 운영위원회 내에서 윤지선 해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팀이 구성되어 석 달에 걸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 이 사건 보고서의 제3쟁점 관련 부분에는 원고가 윤지선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내용도 있는바, 위 보고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반박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윤지선이 원고와의 갈등으로 '손잡고'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부당해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 사건 보고서에서 사용된 '부당해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행태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도 나타내기 위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또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표현의 차이로 보일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중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4) 제4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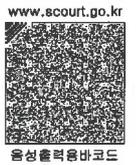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평화박물관이 '손잡고'에 사무실과 활동가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손잡고'가 자립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어서 '손잡고'의 자립시 기존 지원금을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지원약속은 무상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다룬다.

##### 나) ⑪ 부분

갑 19호증, 을 7, 21, 32,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손잡고'는 2016. 6.경 후원금 모집에 더 이상 평화박물관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기로 한 사실, 그런데 평화박물관 측은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손잡고'의 후원금에서 기존의 사무실 이용료, 윤지선의 급여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원금 반환을 거부한 사실, 이에 '손잡고'는 2016. 7. 8. 원고와 평화박물관에게 평화박물관의





계좌에 있는 '손잡고'의 후원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17. 3.경 평화박물관을 상대로 후원회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 5688910호,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4318호)를 제기한 사실, 위 후원회비 반환청구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손잡고' 운영 초기에는 사무실과 활동가 비용을 평화박물관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2015. 2. 25. 개최된 '손잡고'의 15차 운영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윤지선의 급여 부담 주체를 '손잡고'로 변경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보고서 작성 당시인 2016. 7.경 원고와 평화박물관 측은 '손잡고'가 기존의 사무실 이용료와 윤지선의 급여 등 활동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던 점, ○ 이에 '손잡고'는 위와 같은 비용 공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양자 사이의 의견 대립이 있었던 점, ○ 피고들은 이 사건 보고서에서 원고와 평화박물관 측이 위와 같이 '손잡고'의 비용 부담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약속을 저버리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평화박물관이 당초에는 '손잡고'의 운영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바 있었던 사정과 원고와 평화박물관의 주장에 반대하는 '손잡고'의 입장 등을 강조하기 위하여 ⑪ 부분에서 수사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 '손잡고'와 평화박물관 사이의 위 후원회비 반환청구소송 사건의 판결에서도 '손잡고'의 운영 초기에는 사무실과 활동가 비용을 평화박물관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⑪ 부분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⑪ 부분에서 윤지선에 대한 2015년 급여부터는 '손잡고'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누락하



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보고서 작성 당시 '손잡고'와 평화박물관 사이에서 인건비 등과 관련한 정산 여부에 이견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를 두고 적극적인 사실왜곡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위법성 조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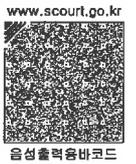
피고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보고서 중 ④ 내지 ⑪ 부분에서 적시한 사실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보고서의 작성 경위, 목적, 그 구성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시민단체의 운영 실태 등을 대중에게 알리고, 그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부 인사의 독선이나 전횡을 비판하며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 보고서를 작성·배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나 목적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보고서 중 ④ 내지 ⑪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약 석 달 동안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 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하여 1기 운영위원 등의 검토를 거친 점, 위 보고서 내용에 원고의 주장도 포함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고서 중 ④ 내지 ⑪ 부분이나 그것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고서의 제1 내지 4쟁점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적시된 사실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판결문 기재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보고서 중 ①, ②, ③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④ 내지 ⑪ 부분은 허위의 입증이 부족하며 위법성도 조각되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보고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윤	<u>이상윤</u> 
	판사	권경원	<u>권경원</u> 
	판사	신동일	<u>신동일</u> 





# 정본입니다.

2018.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김정국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